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이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tha@esak.or.kr

1. PL법의 개관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된다. 시행기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기인한 피해소비자의 피해와 손상을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은 현행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보다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소한 피해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크게는 관련 법정소송이 앞으로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등은 잘못하다가는 제품의 결함과 이에 따른 피해에 의해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돼 기업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도산된 국외사례를 보며 걱정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2년 당시 최대의 석면 제조업체 맨빌(Manville)사가 석면질환과 관련된 장기간의 PL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와 보상금 부담을 못이겨 결국 도산하여 파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전으로 인하여 하우스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고령군의 이모씨 등 522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한국전력은 손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전기공급규정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PL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전력은 이에 대비해 전기기자재 구매시 PL보험가입업체를 우대하는 등 구매요건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해외 사례나 국내판례가 말해주듯이, PL법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무서운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L법은 미국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시발되어 1963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유럽은 1988~1994에, 필리핀은 1992년에 그리고 중

국은 1993년에 그리고 일본은 1995년에, 등 이 지 구상의 30여개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PL법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고, OECD가입국중에서는 PL법을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

PL법 적용을 받는 제조물에는 소프트웨어와 농수 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과 관련 부품과 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기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까지도 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창호 기타 등기구 등은 포함되며, 발전기나 변압기는 물론이고 발전소 에서 송전된 전기 자체도 PL법 대상이 되는 것이다.

PL법은 앞으로 제조업자 등과 피해소비자의 PL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제조업체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PL법은 피해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 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 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피 해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구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소비자와 제조 업체 등간의 PL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자연히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PL법은 일반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생활 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반면에 기업자 입장에서는 PL법이 시행되면 제품개발의 지연 등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같 은 영향은 그대로 전기제품 업계에도 고스란히 적 용될 것이다.

기업이 PL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이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 제품의 질, 원가, 납기, 서비스로 표현되는 품질개념 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추가 내지 강화해야 한다. 부 품 및 원재료를 제공하는 기업과 완성품을 생산하 는 기업이 서로 책임소재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어 분명한 선을 그어 두어야 한다.

PL제도에에서는 보험가입도 필수적이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이와 더불어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자체없이 리콜(recall)해야 하며 제품을 개선하고 개량함으로 써 결함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초기에 막아야 한 다. 그래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호미로 막 을 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삽으로 막게 된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PL법 시행을 바로 앞두고 긴 장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이제 먼산 의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인 것이다. PL법 대응에 부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응준비는 태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 PL법이 시행되면 PL분쟁으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산 위기를 맞는 업체 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PL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제조물 생산유통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우 리나라의 제조체계와 소비문화의 새롭고 밝은 장을 열 것이다.

2. 머리말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바로 앞두고 TV,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한 여론

형성과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PL사건으로 인한 배상책임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보다 앞서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PL대책 수립과 PL사건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기업들도 PL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PL위험은 기업들에게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중대한 위험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PL보험가입을 포함한 PL대책수립을 사업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PL대책은 무엇보다도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PL보험은 PL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PL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 PL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PL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와 같은 위험의 분산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PL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유통 또는 사공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등

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3. PL보험약관의 종류와 구성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담보기준별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 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약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은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한다.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한다.

그리고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은 보상의 대상을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한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는 배상청구 기준 증권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지만 그 사고가 사전에 정해진 일정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 일정시점을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라고 칭하는데 통상적으로 최초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 정하며 이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

급일자를 적용한다.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Insurance) 보험약관은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약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보통약관에 특별약관이나 추가특약 사항을 합쳐서 계약을 하게 된다. 특약사항의 경우에는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그때그때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문약관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특별약관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거기에 각 업체 사정에 따라 기타 특별약관과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국문약관은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내수용으로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는 약관이다. 영문약관은 해외 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한다.

국문약관은 배상책임보험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규정한 생산물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사용하는 형태다. 주로 손해사고기준약관으로 내수용 제품에 사용되는 약관이다.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조항을 추가하여 담보할 수 있다.

판매인 추가특별약관은 판매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은 명의사용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 보험료정산특별약관은 보험가입 시점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단, 이때 확정보험료가 보험가입 시점의 최저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문약관은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일반조항, 보고연장기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에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사용하는 형태다. 배상청구기준약관으로 수출품에 사용되는 약관인데,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Additional Insured(Concessionaires) Clause는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하는 특약이고, 또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는 판매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하는 특약이다. 그리고 Premium Adjustment Clause는 보험가입 시점의 예상 매출액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단, 이는 확정보험료가 보험가입 시점의 최저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특이한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가 있는데,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고,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기초공제특별약관)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2) 담보기준별 구분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 보험약관은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 이틀테면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한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보험약관은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한다.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고연장기간 조항을 통하여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담보한다.

여기서 보고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은 소급일자와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일정기간을 담보하는 자동보고 연장기간(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이 있다.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의 제한없이 담보하는 선택보고연장기간(Optional Extended Reporting Peri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Mini Tail)와 중기(Midi Tail)로 구분되는 자동보고연장기간과 선택(Full Tail)인 선택보고연

장기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Mini Tail)는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사이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에 보고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만기일의 그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중기(Midi Tail)는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사이에 발생되고 보험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고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선택(Full Tail)은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사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한다. 다만 보험 만기일 60일 이전에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4. PL보험약관의 내용(국문약관을 중심으로)

1) 담보대상 제품의 범위

PL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PL법상의 제조물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면 일부 제품에 국한시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주로 거래 상대의 요구로 특정 제품에 한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흔히 있는 경우로서 판단을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품에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조건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보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금 수혜자가 된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에 대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혹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추가보험자특약(Additional Insured Endorsement)과 같이 별도의 추가피보험자배서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기재되는 추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직원과 같이 본래의 피보험자는 아니지만 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제한된 조건내에서 피보험자로 간주된다.

3) 보험기간

기본적으로 PL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되었고 또 언제 출하되었는가 하는 점은 불문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보험기간 중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PL보험을 든 경우, 몇 년 전에 제조되어서 출하된 제품에 의해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불대상이 되며, 장기간 부보했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타 보험금 지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고의 발생이 보험기간 중이면 판결이나 화해에 의해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이 보험기간 종료 후인 경우에도 지불대상이 된다. 사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이를테면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는 손해배상 청구일이 보험기간 중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계약에 의해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일 또는 제조경과연수 등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4)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있다.

첫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은 사망, 상해, 질병의 경우의 치료비, 휴업손실과 위자료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재물 손해의 경우에는 멸실시의 시가와 원상회복에 요하는 수리비 등이다.

둘째,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등에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한다. 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다.

사전에 보험회사와 협의한 후 승인을 얻어 지출한 소송 이틀테면 조정, 화해, 중재를 포함한 소송을 위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와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리고 협력비용 즉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 행하는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5) 보상되지 않는 손해(면책조항)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규정한 약관의 부분을 면책조항이라 하는데, 이것은 생산물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수입,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시변, 폭동, 노동쟁의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Act of God)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맺은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해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생태계 훼손이나 환경오염으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 지체 및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의 적합성 또는 내구성이 결함에 의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 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상해나 재산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에 대한 배상책임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PL보험약관의 생산물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일부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보통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인데 이를 태만히 하여 확대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책임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즉 구상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책임
- 사고 발생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손해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회사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6) 보상 한도액

PL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보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보상한도액은 주로 1사고당 한도액과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액으로 설정한다.

1사고 당 한도액은 하나의 사고(any one occurrence / each occurrence)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및 재물 사고를 합산한 보상한도액이다. 즉 대인 대물 일괄 한도액 또는 combined single limit로 정한다.

그리고 총보상 한도액(aggregate limit)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를 말한다.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이 이 총보상 한도액에 도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 된다.

7) 공제 금액

공제금액이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사고 당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공제금액의 경우,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점을 보다 확실히 검토하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차이 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상한도액
-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영문약관의 경우에는,

-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면책금액이라고도 칭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1건 당 5~10만엔 정도에서 설정된다. 면책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정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다.

5. 보험요율

보험료는 보험가입 생산물(제품)의 매출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보험료 = 매출액 X 보험요율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즉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주된 사용연령층, 담보기준 품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PL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요율이 결정되면 보험기간 중의 예상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예치보험료(deposit premium)를 납입하게 된다.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보험기간 중의 실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확정보험료가 기납입한 예치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게 된다.

6. 보험가입절차

PL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보험계약 조건 협의

보험가입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조건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정 자료로 활용할 설문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2) 보험요율 산출

보험조건이 결정되고 보험요율 산정 자료들이 구비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안내서를 제출한다.

3) 보험가입 결정(청약서 제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안내서의 모든 조건과 내

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후 정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4) 보험증권의 발급 및 수령

보험회사는 정약서를 접수하면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증권을 수령하게 된다.

7. PL Claim처리 절차

PL Claim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접수하고 PL절차도에 의하여 기록정리하고 취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PL사고의 클레임 접수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가 어떤 형태로 기업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에 클레임에 대한 대책을 매뉴얼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레임을 접수한 부서는 PL전담부서나 대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게 된다.

2) 클레임에 대한 정보수집

PL담당부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사실조사와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신고자의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피해에 대해 위로하는 한편 사고 정보 즉 사고 발생일시, 사고발생상황, 제조물 사용상황 등과 피해내용 그리고 제조물 정보, 이를 테면 구입년월일, 구입처, 보증서의 유무, 수리, 고장, 개조의 유무,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주장 즉 사고원인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허기를 얻어서 사고 현장과 피해물의 형상을 사진촬영하고, 제조물의 현물은 검사를 위해 회수해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 단계에서는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나 회해에 대한 교섭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체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고 확대 방지책을 실시한다. 이와 아울러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미리 취한다.

3) 사고의 원인분석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자 곧 기업은 PL법상의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여 원인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본을 제출한다. 보험회사에서도 사내 기술 관련부서, 사외의 전문기관 등과 협조 또는 의뢰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기업과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검토하게 된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배상 교섭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타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교섭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와 사전 상담 없이 책임의 유무와 배상금을 당사자간에 결정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

히 유의하여야 한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으므로 원인분석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고 소송 등의 법적 수단에 호소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 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된다.

4) 합의서 작성과 보험금 청구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하게 된다. 용지, 양식, 내용 등은 보험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면 PL클레임은 해결되게 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증권
- 손해배상금 및 그 부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될 보험금을 결정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가 지연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산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 형태의 보험금으로 먼

저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은행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체 상금을 받게 되어 있다. 물론 지체된 원인이 보험회사에 있지 않고 피보험자측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시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어떤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꼬리말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완성품, 부품, 원재료가 모두 보험가입의 대상이 된다. 또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가공 농수산물과 축산물이 대상범위에 포함됨으로 제조물책임(PL)법의 제조물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면 일부제품에 국한시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주로 거래상대의 요구로 특정제품에 한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판단을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품에 PL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 조건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보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금 수혜자가 된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복수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한 제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제품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 손실을 보상하며, 선택담보로 제품의 수리기간 중의 사용손실도 담보가 가능하다.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분배하는 생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품질 결함으로 인하여 생산물을 수리,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제품의 이윤을 벤 원가를 비교하여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

최근에는 생산물보증책임보험이 생산물연장보증제도(Extended Warranty)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 마케팅의 차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통한 판매와 MS제고 및 회사에 대한 소비충성도(loyalty) 제고를 통한 장기적 마케팅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겠지만, 안전하고 내구성있는 좋은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여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PL법에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이다. PL보험회사의 담당자와 혹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하여 자기 회사와 총매출의 사이즈에 적합한 PL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후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